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인권협력과 및 안전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세분석국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회문화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의견조치 진행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통일부령 제 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7호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제8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6년 3월 31일”을 각각 “2028년 3월 31일”로 한다.

통일부령 제11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중 “이산가족과장”을 “이산가족납북자과장”으로 한다.

통일부령 제12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4월 10일”을 “2028년 4월 1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통일부령 제111호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통일부령 제111호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통일부령 제111호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 립 6.25 전 쟁 납 북 자 기 념 관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 립 6.25 전 쟁 납 북 자 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u>이산가족과장이 분장한다.</u>	② ----- ----- ----- ----- ----- ----- <u>이산가족납북자과장---</u> .	② ----- ----- ----- ----- ----- ----- <u>이산가족납북자과장---</u> .		
통일부령 제126호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통일부령 제126호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통일부령 제126호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사회문화분석팀은 <u>2026년 4월 10일까지 존속한다.</u>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8년 4월 10일-----.</u>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8년 4월 10일-----.</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평화교류실	0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평화교류실 평화경제기획관	0명	2028년 9월 30일까지
3. 평화교류실 평화교류총괄과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4. 평화교류실 평화경제·제재관리과	5명 (4급 1명, 6급 3명, 8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5.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6. 평화교류실 접경협력과	4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7. 사회문화협력국 남북인권협력과	0명	2028년 3월 31일까지
8. 사회문화협력국 안전지원과	0명	2028년 3월 31일까지
9. 평화협력지구추진단	1명 (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10.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	8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11.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